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규정

신설 2016.12.21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캡스톤 디자인(종합설계)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과목의 정의)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란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모든 이론 및 수행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(또는 사회)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창의성, 실무능력, 팀워크,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제3조(개설기준) 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수강대상은 3학년 이상으로 한다.

- ② 강좌 개설기준은 수강생 2명 이상으로 한다.
- ③ 교과목명에 '캡스톤 디자인'(국문) 또는 'Capstone Design'(영문)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수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, 수강인원이 많거나 교과 운영상 필요시 심의를 거쳐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담당교수 2인 이상으로 개설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전공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팀티 칭 구성을 권장한다. 단, 담당교수의 시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⑥ 학점을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. 단,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학점의 범위는 확대 가능하다.
- 제4조(수업운영) ①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 별로 최소 2인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학생은 과제 별로 과제계획서, 중간보고서(필요시),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과제계획서(학기 초): 과제목표, 수행계획, 수행일정, 참여인원 및 역할, 지원비 신청내역 및 사용계획 등 포함<별표1>
 - 2. 중간보고서(8주차) :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등 포함
 - 3. 결과보고서(학기 말): 설계배경 및 목표, 내용, 결과, 결론, 참고자료, 지원비 사용 내역 및 증빙, 결과물 등 포함
- ③ 담당교수는 과제별로 주별 최소 1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.
- ④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교·내외 경진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

제5조(지원비) ① 캡스톤 디자인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(팀) 별로 재료 및 수행에 대한

별도의 지원비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단,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또한 실험실습비 재원이 있는 학과의 경우 해당 재원으로 부담할 수 있다.

- ② 지원비의 재원은 교비, 기부금, 참여 산업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.
- ③ 지원비의 사용은 재료비, 연구활동비, 지적재산권 출원·등록비에 한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.
 - 1.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수강철회를 하였을 경우
 - 2. 활동실적 미제출, 지원비사용내역 누락 등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- 3. 지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
 - 4. 사전보고 없이 지원비의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

제6조(결과물의 저작권) 캡스톤 디자인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물의 저작권 등의 권리는 원 칙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팀에 있으며, 단 그 사용권은 대학과 캡스톤 디자인 팀이 공유 한다. 이외의 모든 저작권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적재산 보호법 및 저작권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기타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Capstone Design 과제계획서

과제 명					
과제목표					
수행계획					
수행일정					
참여인원 및 역할					
지원비 신청내역 및 사용계획					
구 분 세부항목	품명	용도	수량	단가	금 액(원)
총 금액	원				
2016					
	신청자(대표):			학과(부) (인)	
지도교수(대표):				학과(부) (인)	
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귀하					